



교회재정운영 기준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08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명동 청어람 지하소강당
- 주최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제발제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

최 호 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실행위원, 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의 재무관리, 투자론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연구 및 논의가 많은 반면 하나님 나라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관점에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재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영역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자를 소홀히 여기고 후자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과 맘몬 중 맘몬을 향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한다.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이 청지기 입장에서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고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논의와 검토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분량이 많고, 생소한 용어라고 미리 겁먹고 제외시키기보다는 각 규정에 담겨있는 원리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시하는 규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문화 규정의 필요성

한국교계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교회 차원에서도 재정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교회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의 생각과 주장에 영향을 받으며 재정이 관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수동적 패배자의 관점으로 방관자적 입장으로 취함으로 발생하는 공동체성 파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교회재정 관리책임은 교회 공동체 전체

에게 있다. 따라서 교회재정 관리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구성원 각자가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도구로서의 재정

1)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연합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결정과 책임은 각 지체들의 연합체인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하므로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 공동체모임인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되 단체적 결정이 아닌 구성원 각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재정관리를 잘못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인 각 성도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전체모임인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일부 역할을 실무자들에게 위임하더라도 재정관리 의사결정의 출발점(예산 승인)과 종점(결산 승인)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재정원칙 결정 및 관리 주체(재산관리 주체 및 명의자)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 예산수립과 승인

예산 수립과정에서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방향을 고민할 때, 계획 자체가 몇몇 사람들이 정하여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경우 교인들이 수동적 참여자가 되는데 비하여,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고민하면서 설정한 예산은 성도 각자가 교회의 방향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3) 통합과 조정 역할로서의 예산

예산은 교회 방향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들을 예산 조정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회 방향성의 우선순위를 모두가 참여하여 조정하면서 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교회 본연이외의 이탈 방지(수익사업 금지, 제한적인 차입)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 하셨지만 현대 교회들은 교회건물 신축과 같은 더 큰(?)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나라에 돈이 부족하여 교회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신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는 인간들의 과시를 위한 욕심이 성스러움으로 치장한 것 뿐이며, 이러한 논리가 교회 내에 침투할 때 교회는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게 되며 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맘돈을 섭기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재원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차입금은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빚진 상태로 계속 남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경고한 성경과도 대치되므로 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한 차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청지기 관점에서의 재정관리

(1) 재정담당자의 준비와 교육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기타 제직들에 대하여서는 선발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매주 연습 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재정담당자로 세우거나 세운 후에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전혀 없다면 이는 교회가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큰 실수가 된다.

청지기는 무조건 ‘열심히’라는 충성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를 할 책임도 같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관리를 위한 준비되고 배우는 과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무급(성도들의 봉사)

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삼꾼이 되어 버리므로 전임 사역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일반성도들의 교회내 봉사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3) 총액주의

청지기는 개인의 생각으로 보고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결과를 주인이 알기 쉽게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보고는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수액으로 보고하는 순액주의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총액주의로 관리, 보고하여야 한다.

(4) 목적에 따른 재정 관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재원은 반드시 원래 기도하면서 준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감사 및 결산 승인

위임을 받은 청지기는 그 일한 결과를 계수하여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관리한 재정사용결과를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책임을 받은 교회 구성원이 다시 한번 그 사용과정이 하나님원리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결산 승인이다.

이러한 검토과정에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의회가 특정한 제 3자에게 일차적인 검토를 맡기는 것이 감사이며, 제3자가 검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직접 재정 집행에 참여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면 평소에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의 검토절차가 바람직하다.

5. 지혜로운 관리

현재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체계로서는 교회의 재산현황과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맡겨진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오류검증과 입체적인 관리를 위한 복식부기방식과 발생주의 회계처리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자료들을 문서로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승인, 집행과 기록의 기능을 분리하여 오류와 부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6.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교회의 재산은 교회 내부 관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관리자인 청지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재산은 교회 외부의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공유하는 나눔의 자세가 필요하다.

7. 선교 도구로서의 결산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한 결과들을 책자 또는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산서는 일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한 과정과 결과들을 숫자라는 언어의 형태로 표현한다. 따라서 결산서는 교회 내부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불신자들에게도 공개하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알려야 한다.

즉, 결산서 공개를 통하여 결산서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이웃사랑 실천의 방법으로서의 세금과 사회보험

세금과 사회보험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운영비용을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랑도 실천하지만 당연히 해야하는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관점에서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한 납세문화를 위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협조의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한 교회재정관리에 관한 논의와 고민들을 앞으로 계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사용에서도 하나님나라 원리들이 마음껏 적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지정토론 1

재정에 관한 규정(정관 및 규칙)에 대한 의견

황 호 찬

(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1) 규정초안이 구체적이며 포괄적으로 작성된 관계로 향후 한국교회에 많은 유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용어설명이 별도 항목으로 있었으면 좋겠음. 예) 규정, 정관, 규칙, 규약 등등

(3) 한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괴리가 있어 보임. 현재 초안은 현실보다는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혹은 목표에 초점이 있어 보임.

(4) 최고의사결정기구 (p.2)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이 필요한 조건으로 재산가액의 5% 혹은 수입액의 10%를 중요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인 재산가액의 5%는 재산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을 때에 한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 교회 실정을 감안할 때, 재산가액 5%의 기준은 실효성이 없어 보임.

(5) 실무집행 및 심의기구 (p.2)

사역자회의가 예산조정기구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존재 목적이 각각 다르므로 오히려 예산조정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임.

(6) 예산조정기구 (p.2)

(5)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조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의 자격 혹은 임명 등을 위한 별도 정관 혹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재정운영 (p.3)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애매모호함. 원칙에 포함되었지만 위반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제재를 가하기도 힘들어 보임.

(8) 재정운영 중 건전성 (p.3)

‘반기 (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의 표현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음. 재산 1회 구입비용? 수익적 지출?

(9) 부채와 인용된 성경구절 (p.3)

차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된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아무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의 말씀은 부채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사랑을 많이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10) 회계처리방식 (p.4)

복식부기 요구 기준을 교인수 50명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한국 교회의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어 보임. 또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는 단식부기로 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 효익과 비용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임.

(11) 결산 및 예산 (p.5)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 교회 및 일부 비영리단체에서의 운영성과표는 거의 실익이 없는 보고서의 하나임. 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할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요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12) 감사 (p.6)

중형교회의 경우, 교단소속 교회별로 교차 감사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 교단의 개교회에 대한 통제력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어 보임. 오히려 대형교회는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중소교회의 경우에는 내부감사에 충실히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임.

(13) 사례비 (p.7)

전임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개 교회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만약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한다 하여도 매우 낮은 금액일 것이며, 결국 명목상의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14) 규칙 제4조 재정담당자의 의무 (p.10)

제 3항, ‘재정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유포할 수 없다’에서의 비공식적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함. 비밀유지의 의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듯함.

(15) 규칙 제 20조 현금내역통보 (p.14)

현금내역을 주보 혹은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하여도 개인의 사적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현금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16) 규칙 제44조 원천세신고 및 납부 (p.19)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뿐 아니라 4대 보험에 관한 사항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지정토론 2

교회재정투명화를 위한 제안

박 한 국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 교회재정투명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과거의 관행적인 분식회계 등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기업이 도산하고 결국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엔론 사파산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기법도 크게 변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 및 규정 등이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외형성장에 치우치고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자 세습문제를 비롯하여 교회재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사회적 신망을 잃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 기업은 투명성을 지향하는데 반해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행히 최근에 교회재정투명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회 재정운영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화된 재정담당인력의 부족

교회재정투명화를 위해서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이를 적용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재정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 기업에서는 재정(회계)파트는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환보직대상에서 제외되고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화된 인력을

뽑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양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흠교인 중 재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실제 선출과정에서 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된 재정담당자를 양성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교회는 일반기업과 같이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재정투명화를 위해서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함께 전문화된 재정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현재 이러한 교육을 위탁받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회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기업체에서 재정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경험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들 중에서 교회의 재정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교회 재정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표준화된 시스템(프로그램) 부족

교회재정투명화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식부기의 도입이다.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교회재정투명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교회재정투명화의 전제조건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복식부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교회의 사정이나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업체도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 영세하고 따라서 시스템의 품질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의 추세는 일반기업체가 ERP시스템을 구축하듯이 교회에서도 교적관리에서부터 재정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대형교회의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교회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별로 천차만별인 규정을 표준화하여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교회재정투명화에 동참하려는 교회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시스템구축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이 커지게 되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교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세무행정 협조 필요

교회재정투명화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교회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세액 납부의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교회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현행 세법에서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종교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논의(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는 생략함)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정직한 납세문화를 이룩하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요즘 목회자들이 자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현금지출을 줄이고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하는 교회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할 수 없고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출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한 원인일수도 있다.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탈세를 조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교인들의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재정에 대하여 당연히 최소비용의 지출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으나, 좀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건전한 납세문화의 선도역할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물론 세법행정에 대한 협조를 위해서는 세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재정담당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세무당국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하 “법정증빙”이라 함)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2007년까지는 5만원초과에 대해서만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그 금액이 3만원으로 축소되고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단순히 재정지출의 축소만이 목표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축돌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이 되는 교회부터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회계감사

교회재정투명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작성된 회계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감사는 교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감사와 독립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받는 감사를 말한다.

내부감사이든 외부감사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충족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독립성이 가장 확보될 수 있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감사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사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부감사의 경우 이러한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외부감사 대신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교단소속 교회별로 상호 교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교단별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러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 지정토론 3

공청회 건에 대하여

원 영 대

(부천평안교회 담임목사)

정관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

1. 페이지 1, 규모가 150명, 현금수입규모 1.5억 이상인 교회에 재정 담당 전임 사무원 배치
페이지 5, 결산서 종류 6가지. 결산 감사후 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산서를 작성하는 문제.
페이지 6,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
2. 페이지 5, 예산서를 작성하는 문제
3. 페이지 7,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
4. 페이지 7,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 충실 이행 규정 – 3가지 의무 +1(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6월 말부터)

규칙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

1. 페이지 11, 제9조, 예산조정위원회의 차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지침을 회계연도 전 2개월까지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문제.
2. 페이지 12, 제12조, 예산외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산외 지출도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페이지 14, 제20조4항, 매년 익년초에 해당년도의 개인별 현금내역을 작성하여 교인 개인별로 통보한다.
4. 페이지 18, 제42조, 유형자산의 처분시 제직회의 승인을 얻는다.

종합적 의견

1. 제정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최저 기준 150명, 1,5억원) 정관과 규칙에서 요구하는 재정보고서 작성과 보고,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 전담 사무원을 둘 수 있으려면 재정 규모가 5억원 이상은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회 규모별로 적용 가능한 기준 제시와 쉽게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회복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와 보고가 꼭 필요하지만 세무행정을 앞세워 행정 당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때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교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지도와 간섭을 받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전교회적으로 볼 때 당회가 조직된 교회들은 정관과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없는 교회들이 많다. 교회 재정 투명성과 신뢰회복 운동의 대상이 소수의 중대형교회이므로 적용 대상에 대한 분명한 제시와 홍보를 통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지정토론 4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대한 의견

송 영 민

(함께여는 교회 재정담당 집사)

일반 기업보다 더욱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회가 실상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개혁되어야 할 면이라고 생각해오던 차에 “교회 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잘 되었다.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Worldcom과 Enron사의 회계부정 이후 관련법안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기업들의 회계 관리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교회 대부분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거나, 힘을 가진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 교회의 재정이 좌지우지 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아주 명성이 알려진 갖춘 교회지도자라 하더라도, 맘대로 주무를 수 있고 감독받지 않는 ‘돈’ 앞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도 없는 탓에 “재정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상태로도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교회 재정담당자로서,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책임자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일부 내용은 상기 규정과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나의 의견

1. 규정이 공동의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당회장과 기타 사역자 및 장로들은 어떠한 예외없이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재정을 집행해야만 한다. 임의로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재정담당자에게 무형의 압력을 가하여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힘있는 교회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것이다.

2. 이미 규정에서도 지적한 것 같은데, 재정계획수립자, 재정실행자, 실행자료관리자, 감사 모두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3.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직원들은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교회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한 수입에 대하여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에 대한 나눔과 섬김의 길이므로, 예산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국내외선교와 지원, 이웃돕기, 복지활동 및 지원, 장학금 등에 예산을 집중도록 해야 한다. 연간 예산의 30%, 50% 이상 등 특정 목표를 정하여 운용하면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다.
5. 삼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건물 시공 및 구입, 토지 구입 등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관계없는 곳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산의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쓰여지도록 교회는 힘써야 한다.
6. 재정부서에서 봉사하거나 혹은 지도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임시로 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교회가 장비/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있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회사나 그 회사의 장비/물품을 추천해서는 안된다. 담당자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검토와 판단에 따라 업체와 장비/물품은 결정되어야 한다.
8. 7항에서 언급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이상(예를 들면, 100만원 이상) 소요시, 반드시 두개 혹은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토록 해야 한다.
9. 교회 지도자들은 재정관련 부서에서 실무 혹은 부서장의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대신 사후관리나 감독의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재정부서를 맡아 일을 할 경우, 일반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작부터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는 차원에서 지도자들은 재정부서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규정이 있어도 분명히 틈은 있기 마련이다. 열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조속히 규정을 확정하여, 한국의 교회들에게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향후로는 규정을 수용하거나 실행하는 교회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며, 규정을 실행해 나가는 모범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건전한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규정 원문

재정에 관한 규정(정관 및 규칙)

아래에 제시되는 정관 및 규칙은 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한빛누리가 공동으로 구성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에서 교회재정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며, 적용시에는 재정운용의 성경적 원칙 또는 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별 또는 개별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겠다.

이 규정은 성인기준 출석교인 규모가 150인 이상, 연간 현금수입규모 1.5억원 이상인 교회로서 회계 담당 사무원을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경우 적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담당 전임 사무원이 아니더라도 회계를 별도로 기록,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회계담당 사무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관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정관에는 재정운영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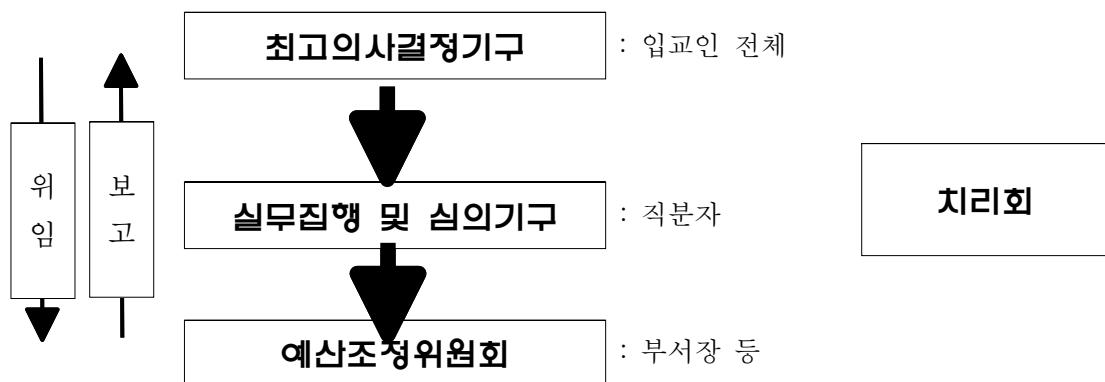
A. 정관(또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조직): 교회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의회(성결교-사무총회/감리회-당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침례)를 받은 자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들을 결의한다
 - ① ...
 - ② 감사의 선임
 - ③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④ 감사보고의 승인
 - ⑤ (주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⑥ 교회 정관 및 세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
- 나) 제직회(사역자회의/직원회-성결교/임원회-감리회):
 - ①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
 - ② 교회 행정과 재정에 대한 논의
- 다) 예산조정위원회: 각부서의 장, 장로 및 목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들을 처리한다.
 - ① 부서별 예산안 심의 및 조정
- 라) 당회(기획위원회-감리회): 장로 및 목사로 구성되며 영적 사무를 처리한다.
 - ① ...

교단마다 내부 운영조직의 명칭이 각각 다르나 최소한 다음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상기 규정은 재정에 관한 규정만 예시하였으므로, 개교회에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기구 명칭과 역할, 구성원 자격 및 선임 방법, 임기, 회의 성원 및 결의 방법 등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고의사결정기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교회공동체 등록교인 전체가 구성원이 되며, 교회의 정관(기본규약) 제정 및 개정, 재정에 대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재산권의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은 고유권한이 된다. 교회의 재산이 ①등기(또는 등록)가 필요하고 ②재산의 가액이 교회전체 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거나 전체 연간 수입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주요)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권의 변경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이 필요하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명칭은 교단 또는 개교회별로 사용하는 명칭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다.

- 공동의회 - 장로회
- 당회 - 감리회
- 사무총회 - 성결교

✓ **실무집행 및 심의기구**: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집행과정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로서 각부서 부장, 집사회장, 목양회장 등으로 구성하는 사역자회의 체제 또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제직들로 구성되는 제직회체제로 구성될 수 있다. 사역자회의 체제에서는 각 부서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제직회 체제에서는 모든 제직들이 각 부서에 소속되어 부서별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예산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제직회의 명칭은 교단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제직회- 장로회
- 감리회 - 임원회
- 직원회 - 성결교

✓ **예산조정기구**: 제직회로는 부서별로 작성한 예산초안을 교회전체 차원에서 조정하는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며, 각 부서의 장, 집사대표, 장로대표, 담임목사 등으로 구성된다.

✓ **치리회**: 장로 및 목사로 구성되며 교회의 영적사무를 치리한다. 치리회도 교단 또는 교회별로 명칭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장로회, 성결교 - 당회
- 감리회 - 기획위원회

제**조(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 가) 청지기적 사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나) 균형: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 다) 총액표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라)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건전성: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①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 ② 반기(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 ③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zero base),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 바) 문서화: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 사) 기능의 분리: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 ①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록하는 경우 재정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총액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한글개역성경에서는 '피차 아무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 지지 말라'(롬13:8)라고 하였으며, NIV에서는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의 표현으로 빚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경고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며, 차입금 상환 계획(일시적 자금 운용 차이 또는 성도들의 작정현금 총액 등)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제**조(수입):

- 가)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현금, 현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 나)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 ① 현금활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 ② 현금 이외 교회의 수입은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실비변상차원을 넘어서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제**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월 1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는 결산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개별 교회의 상황에 맞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등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재정규모가 소규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복식부기는 수입/지출 발생시 재산의 증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또는 결과 성격인 상대계정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통상 차변 및 대변의 방식으로 전표처리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 ② 복식부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단식부기의 다음과 같은 한계성 때문이다.
 - ✓ 재산의 증감 한쪽만 관리하므로 증감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 ✓ 자기오류 검증 기능이 없다
 - ✓ 현금 및 (요구불)예금 이외의 재산 및 부채 관리를 하지 못한다.
 - ✓ 현금과 예금을 통합관리하므로 현금과 개별 계좌의 잔고 확인이 즉시 되지 않는다.
 - ✓ 정상적인 수입/지출 항목이 아닌 항목이 수입/지출로 반영되어 수지결산서 규모를 왜곡시킨다.
 - ✓ 당해 년도의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보유 재산의 사용분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음으로 자산 교체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 장기적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담당자의 자의적인 자금 운용 또는 자금 유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 ③ 교인수가 50명을 초과하거나 연간 현금 수입액이 1.2억원(월 평균 1,000만원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규모가 소규모라고 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시 교회의 경우 인원수보다는 연간 재정운영규모기준이 적용되며, 농어촌 교회의 경우 교인수가 기준이 되는 것을 예상함)

제**조(특별회계):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되 결산시 구분회계 보고서와 통합회계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으로 드린 현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분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되 교회 전체적으로 통합한 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교회가 차년도 교회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중요성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정시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조(예비비):

- 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 나) 예비비 지출시 제직회(또는 예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재정담당자는 예비비 사용내역을 결산시 별도로 보고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비비 사용시 예산을 통합조정하는 기구의 승인이 필요하고, 사용한 예비비는 예비비로 계정과목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용도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예비비사용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여 결산시 보고하는 것이 바른 처리방법이다.

제**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가) 예산서
- 나)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 다)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 라)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 마)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 바) 감사보고서

① 결산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예산서: 다음해 교회의 목회방향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과목별로 정리한 표이며, 전 교인이 같이 고민하면서 작성한 예산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교회가 관리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된다.
- ✓ 수입/지출 결산서: 특정기간(보통 1년)동안 운영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과목별로 정리하여 표시하는 결산서이며, 경상적인 소비수입/지출을 표시하는 '일반수지계산서'와 일반수지뿐만 아니라 재산관계수지도 포함하는 '자금수지계산서' 두 가지로 구별된다.
- ✓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교회가 보유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결산서를 말한다.
- ✓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별로 잔액 내역을 표시한 명세서로서 교회의 재산 또는 부

채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명세서이다.

- ✓ 운영성과표(또는 활동보고서=손익계산서): 순자산(=자산-부채)의 증감을 가져오는 항목을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한 결산서이며, 수지결산서가 자금의 수입/지출만 기록한 반면 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활동결과도 포함한다.
 - ✓ 감사보고서: 결산서는 아니지만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서 모두가 포함된다.
- ② 소규모 교회경우 상기 결산서류중 재산현황표, 운영성과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재산 및 부채 목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장기적으로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도 결산서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재정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조(재정 담당자):

- 가) (자격) 재정담당자는 무흠 입교인으로서 재정관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없는 경우 재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의무) 재정담당자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나라 재정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① 재정담당자는 무흠교인중 재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인력 한계상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임기 시작 전에 담당자가 재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재정담당자는 청지기의 두 가지 속성인 충성과 지혜(눅12:42)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조(감사):

- 가)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 나)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다)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 라) 교회는 Homepage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산 수립 또는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집행 부서의 장은 감사가 될 수 없다.
- ② 감사는 업무(행정)감사와 재정(회계)감사 두가지 부문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재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공개, 비치한다. 교회가 공개하는 재정내역은 교회의 활동내역을 표시하므로 교회가 행한 결과들을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④ 감사는 교회 규모가 작은 경우(교인수 300이하) 내부감사가, 중형규모 교회(교인수 300~1,000인)의 경우 교단소속 교회별로 교차하여 감사하고, 대형교회(교인수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외부감사가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1) 회계처리 및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고, 2) 재정 집행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나 교회내부에 전문적인 감사지식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오랜 공동생활로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은 감사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내부인력으로만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형 규모이상의 교회는 교단내 교회별로 교차하여 감사 역할을 수행하거나 전문적인 기독공인회계 사의 외부감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재산관리):

- 가)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나) 교회는 공동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의 취득, 처분,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다) 교회가 취득하는 재산은 교인 총유로 한다.
- 라) 교회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교회명의로 등록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동의회 의장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 마) 재정담당자는 매년 교회의 재산변동내역을 결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 ① 교회 재산명의는 교단별 '유지재단' 명의 또는 개교회 명의로 등록(등기)할 수 있으며, 개교회가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회명의로 할 수 있으며, 총유는 법인격이 없는 교회의 경우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 ② 총유의 형태에선 교인들은 교회의 재산을 사용, 활용할 수 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교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대법원판례(2004다37775, 2006/4/20)는 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의 경우 소유권을 교인 총유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사례비):

- 가) 교회 유급직원을 제외한 일반 성도의 봉사에 대하여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
- 나) 교회는 전임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하며, 최저생계비의 기준금액이 맙은 역할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한다.
- 다) 특정인에게만 사용권한 또는 혜택이 부여되는 모든 지급액은 사례비로 보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다.

- ① 평신도사역은 대가를 바라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 정직원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봉사 활동으로 보아 사례비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필요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생계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조(퇴직금):

- 가) 1년 이상 수고하고 퇴임하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 나) 퇴직일 기준 월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속년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 다) 교회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장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년도 퇴직금 추가 발생액을 퇴직연금가입 또는 별도 계좌로 적립하며, 별도 적립시 퇴직금지급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평신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속년수 계산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율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조 (세금)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회가 정직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세법상 특혜를 받고 있다.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항과는 별도로 교회는 세법상 부여하는 다음의 협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직한 납세문화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납세하도록 돋는 것은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할 복지후생적 사랑의 분담을 최소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비용 지출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크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세액 납부의무
-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의무

제**조 (재정에 관한 규칙)

- 가) 재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 나) 재정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조 (개정) 본 규정(또는 정관)은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규정을 승인한 주체만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또는 정관)상 의결정족수 구분기준에 따라 개정에 대한 의결정족수도 결정된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교단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B. 재정에 관한 규칙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OO교회의 모든 활동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 및 업무집행을 정확하게 처리하며, 교회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재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인 적용과정을 정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회 재정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 ①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의 실시
- ② 자금의 출납/보관, 조달 및 운용
- ③ 유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 ④ 회계에 관한 전표 및 장부의 기록/보관
- ⑤ 결산서의 작성과 보고
- ⑥ 감사 및 보고

정관이 선언적 규정인 반면 하부규정인 규칙은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완성격이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차대조표일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한다
- ② 적립금은 교회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계정을 의미한다
- ③ 경상수지 잉여차액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의미한다
- ④ 금액적으로 '중요하다'함은 건별 수입/지출액이 년간 현금 수입금액단계별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A. 50억원 초과: 0.5%
 - B.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 C.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D.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
 - E. 1억원 이하: 200만원

금액적 중요성은 재정운용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교회의 규모, 연도별 규모의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담당자의 의무)

- ① 재정위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며, 재정상태에 대해서 정확/신속하게 기록/계산/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
- ② 무흠 입교인중 재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중 재정위원을 선임하되 불가피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회재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재정위원은 업무중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유포할 수 없다.

- ① 대부분 교회 재정담당자들은 전문지식 없이 재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회는 재정담당자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부 교육이 어려우면 외부에 위탁하여서라도 교육받고 준비된 자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재정담당자는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함부로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재정관련 서류 보존기한) 교회는 재정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회계연도별 결산서: 영구
- ② 회계장부 및 전표: 10년
- ③ 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10년
- ④ 보조장부 및 기타: 5년

부피가 커서 계속 보관하기에 부담이 되는 보조장부 등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보관기간을 감소 시킬 수 있으나 증빙서류 및 기초회계장부와 전표는 10년 이상, 결산서는 교회의 역사를 의미하므로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2장 [예산관리]

제6조 (목적) 예산은 교회의 목회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정운용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며,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고
- ②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지체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 ③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맡겨주신 재정을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시작점이 된다.

제7조 (예산기간) 예산의 편성기간은 1년 기준으로 월 단위 예산 수립을 지향한다.

예산은 회계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계절 또는 월별로 시행하는 행사의 규모차이로 월단

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예산집행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월별로 변동이 거의 없거나 전체 예산 규모가 작은 경우(년간 예산 1억 이하)에는 년단위 예산 설정도 무방하겠다.

제8조 (예산의 종류)

- ① 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경상적인 현금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경상적인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건축 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하는 수입과 이에 대한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경우의 회계를 말한다.
- ③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목적, 기한을 분명히 한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작성 및 승인)

- ① 예산은 목회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 ② 예산조정위원회는 차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지침을 회계년도 개시일 전 2개월까지 부문별 예산 수립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 ③ 각 부문별 예산 수립담당자는 회계년도 개시일 5주전까지 해당 부문별 예산을 예산조정위원회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 조정된 예산을 목표예산이라고 한다.
- ④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 의회 3주전까지 제직회는 예산을 심의한다.
- ⑤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 2주전까지 예산을 공동의회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공시한다.
 - A. 목회 계획서
 - B. 예산 수립을 위한 지침
 - C. 수입/지출 명세서
 - D. 인건비 명세서
 - E. 추정 자산 및 부채 목록
- ⑥ 공동의회는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하며, 승인을 받은 예산을 실행예산이라고 칭한다.

- ① 일반적으로 예산은 회계기간 시작 전에 승인하고, 결산은 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의회를 개최하기가 힘든 경우 예산과 결산을 같이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승인 받지 못한 새로운 회계기간의 지출은 전년도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경상적인 지출만 할 수 있다.(준예산제도)
- ② 예산지침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 A. 목회방향
 - B. 예산편성의 방향
 - C. 예산편성 기준
 - D. 필요 서류 목록

제10조 (예산의 수정/경정) 실행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연도 종이지만 당초 승인 받은 실행예산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은 최초 예산을 승인한 기관인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별교회의 상황에 따라 예산 승인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수정/경정 예산의 승인기관도 공동의회가 된다. 즉, 예산을 승인한 기관과 수정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은 동일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집행) 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예산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달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집행시마다 계획과 비교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12조 (예산외 지출) 예산외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승인권자가 예산외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였으면 예산외 지출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전용) 동일한 최소 분류기준 내에서 예산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삽감한 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 ① 예산 전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소 분류 체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심의과정에서 삽감한 항목은 필요이상의 지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예산 전용으로 삽감한 계정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다.

제14조 (예산의 이월) 지출 예산중 그 성격상 당해 년도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비) 예견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항목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① 예비비 설정액은 예비비를 포함하기전 지출예산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삽감/감액된 항목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제직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항목으로 지출/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지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결산시 예비비의 사용내역 명세서를 결산서에 첨부한다.

- ① 예비비의 사용은 새로운 예산의 확정과 같은 개념이므로 사용 전 제직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 받은 후 집행은 일반 집행의 관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예비비는 예산 설정시 미확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유보하는 개념이므로 결산서에 계정과목으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예산항목을 증액시켜서 표시하고, 사용시에는 해당계정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산시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별첨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장 [자금관리]

(자금의 종류) 이 규정에서의 자금이란 현금 및 요구불예금을 말하며 현금은 1~2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수표, 상품권, 우편환증서를 포함한다.

요구불예금은 기간적인 제한 없이 은행에 인출을 요구할 때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제17조 (수입과 지출)

- ① 금전의 보관 및 출납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 ② 금전의 출납은 담당자가 작성한 후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 ③ 금전의 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지출증빙)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결의서 및 집행담당자의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① 세법에서는 5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시 다음의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시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원인행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 신용카드거래
 - ✓ 현금영수증 거래
- ② 이외는 별도로 지하철 교통비 등 소액의 경비지출액으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 집행자가 일시/내용/목적/금액을 기록한 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예입) 주일에 수납된 금전은 재정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재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실 내부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은행에 예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0조 (현금내역통보)

- ① 교회는 현금액수를 개인별 금액이 아닌 종류별 금액 합계액 및 현금자 인원수를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 ② 재정담당자는 현금자 본인만 로그인(Log-in)할 수 있는 구별된 아이디를 부여하여 인터넷상에서 본인 현금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월(또는 분기단위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현금 내역(일시, 항목, 금액)을 알린다.
- ③ 교인이 본인의 현금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담당자는 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재정위원회는 매년 익년초에 해당년도의 개인별 현금내역(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교인 개인별로 통보한다.

① 공개하는 방법은 주보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모두 가능하겠다.

제21조 (현금 시재) 출납담당자는 경상적인 소액현금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현금수입예산 총액의 0.3% 이내의 현금 시재를 보유할 수 있다.

교회 사무실에서 현금지출을 대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현금시재'라고 표현하며, 교회 예산 규모별로 지출규모가 다르므로 예산 규모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도 있다.

- ✓ 50억원 초과: 연간 예산총액의 0.05% 이내
-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0.1% 이내
-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15% 이내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3% 이내
- ✓ 1억원 이하: 0.5% 이내

제22조 (장부와 시재 대조) 출납담당자는 매일 현금 출납종료 후 현금시재잔액 및 통장잔액을 장부와 대조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매일 매일 시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규모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시재를 확인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제23조 (은행거래)

- ① 모든 예금은 교회명의로 한다.
- ② 예금계좌는 특별회계 관리계좌, 수입계좌 및 경상비 지출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소액 경상비 지출계좌를 제외하고는 인감보관자와 통장관리자를 분리한다.

- ① 교회 예금을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
- ② 개인명의가 아닌 교회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는 것은 개인이 예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담당자 변경시 통장 명의를 변경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③ 교회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기 위하여서는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제24조 (적립금)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퇴직급여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별도로 적립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장 [회 계]

제25조 (일반원칙) 교회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계처리는 거래의 8요소를 구분하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③ 모든 회계처리는 총액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안된다.
- ④ 계정과목의 종류는 목적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 ⑤ 계정과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신설 또는 통합 표시한다.
- ⑥ 결산서의 양식 및 계정과목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여야 한다.
- ⑦ 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⑧ 회계처리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수익사업회계는 한국 회계연구원이 제정하는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① 단식부기가 가지는 재정관리의 한계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규모교회에서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되 재산 및 부채 리스트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 ② (총액주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서로 상계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발생한 회계사실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 ③ 계정과목체계와 종류는 결산서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④ 계정과목 체계는 전체 규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합하여 재정규모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별항목이 중요한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A. 수입/지출 항목: 연간 수입 예산액의 5% 초과시
 - B. 자산/부채 항목: 교회 재산 규모액의 10% 초과금액
- ⑥ 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은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결산서의 정확한 의미 파악과 기간별 비교를 정확히 하기 위함이다.
- ⑦ 교회가 출판 등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부문에 한하여 일반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제26조 (회계전표)

- ① 모든 재정에 관한 사건의 정리는 회계전표로 기록한다.
- ② 회계전표의 종류는 단일전표 또는 3위식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형식 중 한가지를 택한다.
- ③ 회계전표는 증빙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을 해당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증빙은 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사건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재정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이 있다.

- ① 경제적 행위의 일시, 성격, 내용, 금액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한 것을 전표라고 한다.
- ② 전표에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증빙은 회계적 사건의 발생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이에 대한 자금의 집행을 증빙하는 서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제27조 (장부) 회계상 작성할 장부는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부이다

- ① 현금출납장: 현금의 입금 및 출금을 항목별로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장부
- ② 계정별 원장: 각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
- ③ 보조장부: 각 계정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속성별로 작성하는 장부

제28조 (보조 장부) 회계전표와 장부의 관리효율성을 위하여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예금 계좌별 원장
- ② 유형자산 관리 대장
- ③ 개인별 현금명세

제29조 (장부 마감) 장부작성자는 매 월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장부를 각 계정별로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한 상황을 승인 받는다. 단,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마감한 장부를 매월말 또는 회계연도말에 출력한 문서를 승인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월말 또는 년말에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장부가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30조 (결산서) 이 규정에 의해 주기별로 작성할 결산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주: 주계표
- ② 매월:
 - A. 월계표
 - B. 시산표
 - C.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 ③ 기말:
 - A.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 B.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 C. 재산 및 부채 목록
 - D.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 E. 부속명세서

월계표는 특정월에 발생한 전표만 집계한 것이며, 시산표는 회계기간의 기초부터 특정시점까지 발생한 전표 내역을 집계한 것이다.

제31조 (월차 결산서의 공시) 회계담당자는 매월 단위로 재정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월차 결산서를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교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

제32조 (계정별 원장 및 총계정 원장)

- ① 회계전표를 분개장에 이기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매일 단위로 마감한다. 단, 회계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분개장 작성절차와 총계정원장에의 이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계정의 일자별로 증가 및 감소를 기록하는 계정별 원장을 기록한다.

- ①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매일 단위 마감이 아니라 매주단위로 하여도 무방하겠다.
- ② 수작업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표발생 이후의 절차가 필수적이나 전선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전표작성 이후의 중간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작성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계정과목)

- ① 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표와 같다
- ② 계정과목의 신설 또는 개폐의 경우 재정위원장의 발의로 제직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 (부채) 장래의 지출이 확정되었거나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한다.

제35조 (잉여차액의 처분)

- ① 이월경상수지 및 당기 경상수지 차액인 순자산증가액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전입 또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처분한다.
- ② 이미 적립한 적립금 사용시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장 [특별회계]

제36조 (관리규정) 특정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관리/운영규정을 재정위원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특별기금의 전용)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특별회계결산)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하되,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반드시 전체 회계에 통합되어 보고되어야 한다.

5장 [재산관리]

제39조 (재산 명의자) 교회의 등기/등록되는 모든 재산은 교인의 총유재산으로 교회 명의로 한다. 단, 행정적 절차 미비로 당회장 (또는 재정위원장)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최대한 단기간 이내에 이를 교회 명의로 변경토록 한다.

교단의 원칙에 따라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등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유지재단이 총괄적으로 소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산에 관한 결의) 교회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내용 변경 등 중요사항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재산관리대장)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① 중요 재산에 대하여서는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장에 등재하고, 연 1회 이상 실사를 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 ② 재정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불용처리) 유형자산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도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서는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6장 [세 부]

제43조 (고유번호등록) 교회는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 ① 교회는 교인들이 내는 현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 세 비과세혜택 등 세법규정에 의해 혜택(권리)을 받으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이루기 위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② 세법상 관리에 필요한 관리(세적관리)번호가 고유번호이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발급받는다.

제44조 (원천세신고 및 납부) 교회는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또는 반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징수한 원천세액을 납부 및 신고한다.

(설명 추가) 소득자의 바른 납세문화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제45조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교회는 매 분기(또는 반기)별로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를 반기별로 제출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단순한 협조의무이나 상대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같이 한다.

제46조 (출연재산 보고) 교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결산기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한다.

교인들이 내는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기부금공제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반대급부의 의무라고 이해할 수 있다.

7장 [감 사]

제47조 (목적)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목적은 목회계획과 예산방침 및 승인 받은 실행예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교회의 결산서가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서 교회 결산정보 이용자에게 교회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48조 (감사인의 적격성)

- ①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이어야 하며, 재정 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② 감사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인 이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 ①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감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공공예배에서 아무나 성가대에 올라설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② 감사 선임시 감사인의 독립성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 교단소속 교회별로 상호 교차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49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회계기간중의 업무감사 및 결산기 종료후 결산에 대한 결산감사 두가지 종류 모두 시행하여야 한다.

- ① 업무감사는 일상적인 업무가 내부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이다.
- ② 결산감사는 연말 결산서가 사실과 부합되는 정보를 표시하는지, 표시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이다.

제50조 (감사조서)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항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업무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감사조서라고 하며, 감사조서에는 사실에 대한 조사와 평가 및 개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51조 (감사 및 보고)

- ① 감사인은 업무흐름에 대한 감사와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만들어 책자로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하는 교인들이 향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감사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오류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되도록 감사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청한 후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교회공동체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1. 본 시행규칙은 200*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